

1972 이후

국민학교 조사표

을산반곡국민학교

국민학교 조사표

확인사항

1. 「1. 학급수 및 아동수」와 「2. 인명별 아동수」의 남녀학생총수가 서로 같은가?
2. 「1. 학급수 및 아동수」와 「3. 아동수별 학급수」의 학급수가 서로 같은가?
3. 「2. 인명별 아동수」에 표상학년제 비하여 학생의 연령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기재되지 않았는가 (예: 1학년이 13세, 5학년이 6세…… 등)
4. 「4. 학년별 부제 수업별 학급수」의 학급수가 전부제 수업으로 기입되었는가
(1부제 학급수와 보통교실수가 거의 같을 것임)
5. 「5. 아동면동상황」의 제수자원에 정확한 수가 기입되어 있는가?
6. 「6. 졸업후의 상황」에 1971학년도의 졸업자수가 기입되어 있는가?
7. 「9. 자격별 교원수」의 편직위별 교장 또는 교감수와 무자격교원수가 정확한가?
8. 교원사항의 각항(8, 9, 10, 11, 12, 13, 14, 15, 17)의 교원수가 같은가?
9. 「16. 교원동태」의 퇴직교원수의 계와 「16. 출신별, 경력별 퇴직교원수」의 계가 서로 같은가?

10. 「20. 학교용지」의 교사대지면적이 「21. 교사」 총계의 면적보다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11. 「21. 교사」의 특별교실수와 「24~1. 용도별 특별교실」의 합계가 서로 같은가?
12. 「21. 교사」의 비용교실수를 제외한 실수와 「22. 기타시설」의 실수와 면적의 합계가 「25. 구조별 건물」의 실수와 면적과 서로 같은가?
13. 「27. 정학년수별 목조건물」의 계는 「25. 구조별 건물」의 보통 및 특별교실과 관리실의 합계와 서로 같은가?
14. 「23. 교육현황」의 비·결함이 2인용으로 환산 기입되었는가?
15. 「28. 보통교실의 면동상황」에 적혀 실용 현용의 교실수가 정확한가?
16. 「21. 교사」의 용도면적이 「24~2. 용도현황」의 면적 합계와 서로 같은가?



(1) 설립 년월일	국립 공립 사립	(2) 본교 분교별	(3) 부수지 지경구분	도 시 군 수북지·감곡지	(4) 소재지	서 구 동 가 번지
(5) 학교명	(바) 부산국민학교		(6) 설립자 (학교법인) (비밀일)	(7) 학교 설립일 년월일	(8) 동 동 구내학교	(9) 동일구내 학교명
(10) 학교장명	오영호 (확인우남인오)		(11) 취임자명	교사	이	종경 (인)

기입상의 유의점 (학생사항)

「학급수 및 아동수」에는 특정 (인가) 및 편성되어 있는 학급수와 아동수를 확인필로 기입할 것.

「특정학급」……부일학교의 특산 (학급당 경비) 및 초원의 특정을 외국의 특정인 학급수와 국·사립은 인가된 학급수를 기입할 것.

「전성학급」……특정 또는 인가 학급에 편제없이 4월 1일 현재 실제 편성되어 있는 학급으로 다음의 의미가 기입할 것.

① 다음의 경우에는 학급수를 기입한다.

② 4월 1일 현재 원일교사수리등 부속이반 이유로 일막간 분산 수업할 때.

③ 결근자 (휴직자는 제외)의 학급을 일막간 분산 수업할 때.

④ 다음 경우에는 학급수를 기입하지 않는다.

⑤ 실제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 (5학급까지는 수업담당)과 교감 (11학급까지는 수업담당) 및 주임교사의 학급을 명목상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

⑥ 신규교원 총원칙적 이전에 미리 학급을 편성할 때.

「단식학급」…… 같은 학년의 아동수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급

「부식학급」…… 2개이상의 학년의 아동으로 혼합 편성되어 있는 학급

「단 과」…… 전학년 (1학년~6학년)의 아동이 1개학급으로 혼합 편성되어 있는 학급. 단, 단급학교에 있어서도 5개이하의 학년의 아동으로 학급이 되어 있을 때 부식학급에 기입한다.

2. 「연령별 아동수」는 연령별로 의한 아동수를 기입하고 해당학년에 특하여 기재된 연령을 비교 확인할 것 (해당학년에 특하여 지나치게 연령의 차가 생기는 학생의 연령은 다시 확인할 것).

(※ 「1. 학급수 및 아동수」의 학생합계와 서로 같아야 함)

3. 「아동수별 학급수」는 학급당 편성아동수에 의한 편성학급수를 기입할 것이며, 67명의 학급일 때는 「61~70」안에 1개학급을 기입한다.

(※ 「1. 학급수 및 아동수」의 편성학급수와 서로 같아야 함.)

4. 「학년별 부제수일원 학급수」는 편성학급수에 의하여 기입하고 2부제 수업 이상에 있어서 오전·오후로 1주일씩 교대로 수업할 때 어느 한쪽을 계속 오전(후)반으로 간주하여 아래에 의한 학급수를 기입한다. ②

「1부제학급수」…… 1교실을 1개학급만이 사용하는 학급수와 2부제 수업 이상 일 때 1교실을 별개를 사용하는 학급수 즉 오전에 종료하는 학급수를 기입한 것. (1부제 학급수와 보통교실수와 거의 일치될 것임)

「2부제학급수」…… 1교실을 2반별로 사용하는 학급수를 기입한 것.

「3부제학급수」…… 1교실을 3반별로 사용하는 학급수를 기입한 것.

「4부제학급수」…… 1교실을 4반별로 사용하는 학급수를 기입한 것.

(예) 2학년의 7개반이며 해당교실이 3개실로서 3개반, 2개반, 2개반의 3개조로 나누어 1주일씩 3교대로 3부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반지를 3개반을 1부제, 2반제의 2개반을 2부제, 3반제의 2개반을 3부제에 학급수를 기입할 것.

5. 「아동노동상학」은 1971년3월1일부터 1972년2월28일까지의 인동을 기입한 것.

「취학유체지수」는 학교에서 장기결석 등으로 인하여 (연락불응) 가제적 처분된 학생수를 기입할 것.

「장기결석」 연속적 또는 수시로 60일이상 결석한 아동수를 기입

「제수자」 제수한 학생수를 기입

6. 「졸업후의 상황」 1971년도 졸업생 (72년2월의 졸업자)을 대상으로 구분 기입할 것.

「전학희망자」 중학교로의 학교에 전학을 희망하여 응시한 학생수를 기입할 것.

(전학희망자>전학자)

「전학자」 자기 전학한 학교별로 기입할 것.

「기 타」 병동아학교 및 외국의 학교에 전학한자 수를 기입할 것.

「직업양성소」…… 취업을 위하여 청소년직업학교와 수련장출소 또는 학교 및 가정 계통에 편입되어 있는 직업인양성소에 입소한 자를 기입한다.

「농림어업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기입한다.

「자업희망등」…… 기입제 및 국·사설기관 등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자를 기입한다.

「무직자」…… 직업이 없는 자를 기입한다.

「미 상」…… 졸업후에 동료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를 기입한다.

(※ 전학자+취업자+무직자+미상 = 기학년도졸업자수)

1. 학급수 및 아동수

구분	학급수	아동수		
		총	남	여
단	1 학년	2	46	40
	2 학년	2	35	46
	3 학년	2	56	60
	4 학년	2	44	37
	5 학년	2	52	40
	6 학년	2	65	57
합	12	298	280	
부	2계 학년			
	3계 학년			
	4계 학년			
	5계 학년			
	계			
합				
합	12	298	280	

2. 연령별 아동수

학급수	구분	연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 학년	40	5	1							
2 학년	연	35	2	1	1								40
	모		33	1	1								35
3 학년	연		45	1	1								46
	모			50	6								56
4 학년	연			48	1	1							60
	모				41	2	1						44
5 학년	연				35	1	1						37
	모				50	1	1						52
6 학년	연					38	2	1					40
	모						60	2	3				65
합	연	40	38	52	48	52	62	3	3				298
	모	38	47	59	36	40	58	1	1				280
합	계	78	85	111	84	92	120	4	4				578

3. 아동수별 학급수

구분	학급수	20	21	31	41	51	61	71	81	91	101	합
		1 학년			1	1						
2 학년				1	1							2
3 학년					1	2						2
4 학년					1	2						2
5 학년						2	2					2
6 학년							2	2				2
합				3	5	2	2					12

4. 학년별 부초수입별 학급수

학급수	구분	부초수입				합
		1부	2부	3부	4부	
1 학년	단	2				2
2 학년	단	2				2
3 학년	단	2				2
4 학년	단	2				2
5 학년	단	2				2
6 학년	단	2				2
합	단	12				12

5. 아동 분류 상황

구분	학급수	수차			합	비율	비율	비율
		수	차	수				
1 학년	단				8	2		
	모				5	3		
2 학년	단						1	
	모				2	1		
3 학년	단				2			1
	모						1	
4 학년	단				3			1
	모						3	
5 학년	단				5			1
	모				1			1
6 학년	단				2	2		
	모				1	2		1
합	단				20	6		3
	모				9	10		2
합	계				29	16		5

6. 졸업후의 상황

구분	기학년도	전 학 자				전 입 자				무적자	비상
		전	학	자	자	전	입	자	자		
남	41	37	37					4			
여	44	40	40					4			
계	95	77	77					8			

14. 「체육가의 직인별 교원수」는 체직교원에 속하여 남자교사일 경우 그 체육가인 여자의 직업과 여교사일 경우 그 체육가인 남자의 직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분에 의한 교원수를 기입한다.

「기타」란별 교원, 공무원, 회사원이 아닌 직업에 종사하는 자

「육신자」이혼자 또는 기혼자라도 체육가가 있는자는 육신자란에 기입 할 것

15. 「출신별 교원수」는 체직교원에 대하여 그 출신별로 구분하여 기입할 것

「교육대학 졸업자」······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사범학교 졸업자」······사범 학교 또는 구제사범학교의 특과, 실상과, 강습과, 예과, 연습과 등의 졸업자는 사범학교 졸업자에 기입한 것

「양성소 수트과」······양성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후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검정고시 합격자」····교원 자격 검정고시에 의하여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

「기타」······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

「부자격」······교원 자격이 없는 자

16. 「교원 동태」에는 체직교원에 대하여 1971년 4월 2일부터 1972년 4월 1일 사이의 동태를 기입 할 것

「신규제출」승진이나 전임자는 제외하여 신규로 채용된 자 수를 기입하되 시·도 교육위원회의서 신규제출하여 학교에 배치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에서 신규제출으로 건주 기입 할 것

※ 「결혼퇴직」이나 「임산 휴가」에는 여자에 한하여, 「병역휴직」은 남자에 한하여 기입함을 유의할 것

「전출·전임」은 아랫에 의하여 도내외로 구분하여 기입할 것

「도내」····도내(시·군)교육청건의 이동자 수

「도외」····도외(시·도)교육위원회의건의 이동자 수

「임산휴가」는 임신으로 휴가를 위한 인원수를 기입할 것

17. 「효봉별 교원수」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서만 작성하도록 하며, 체직교원에 대하여는 효봉별로 교원수를 기입할 것

※ 「주임교사」 및 「양호교사」와 「실거교사」는 교사란에 합산 할 것

※ 「전임강사(임시교사 포함)」의 효봉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입된 효봉을 전임강사의 효봉으로 건주하여 기입한다.

18. 「출신별, 학력별, 퇴직교원수」는 「16.교원동태」의 퇴직교원의 세부 내역에 출신별, 경력별로 세분하여 기입 할 것

※ 「16.교원동태의 퇴직자 재」와 서로 같아야 함

19. 「기각직원」은 각 직급에 따라 정규 임시직으로 구분 기입할 것

「일반직」····사무, 경리직, 관리직, 기술직 등

「기능직」····전수원, 전기원, 난방원, 기관원, 기관, 영입원 등

「고용직」····사관, 용인, 수위, 타자원 등

「정원」공무원 정원법에 의한 정원을 기입한 것(남자구분은 하지 말 것)

「정규직원」국·공립학교····공무원 정원법 범위 내에서 발령된 자
사립학교····학교 예산의 봉급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자

「임시직원」····학교 예산의 정급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자
단, 연간 계속 위촉하여야 함

※ 1. 국·공립학교에서는 정원명상의 직급의 구분에 의거 분류 기입 할 것

※ 2. 사립학교에서는 일반직의 직급이 없으므로 4급 감란에 기입 할 것

14. 배우자의 직업별 직역수

구분	배우자					합계	비고
	직업	직역	직역	직역	직역		
교장						1	
교감						1	
수업교사						1	
교사	1					4	
양호교사						4	
실기교사						5	
전임강사						5	
계	1					2	
	1					7	
	2					4	
						5	
						13	
						5	
						3	
						5	
						8	
						5	
						13	

15. 출신별 직역수

16. 직역 중분

구분	출신										합계	비고
	출신											
교장											1	
교감											1	
수업교사											1	
교사	1										4	
양호교사											4	
실기교사											5	
전임강사											5	
계	1										2	
	1										7	
	2										4	
											5	
											13	
											5	
											3	
											5	
											8	
											5	
											13	

17. 호봉별 교원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교장					1														
교감																1			
교사																		2	1
전임강사																			
계					1											1	2	1	

18. 출신별, 정교원 퇴직교원수

구분	출신										합계	비고
	출신											
교장												
교감												
교사												
전임강사												
계												

19. 직무교원수

구분	직무					합계	비고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직무		
교장							
교감							
교사							
전임강사							
계							

기입상의 유의점 (시설사항)

- ※ 일체의 면적은 m^2 로, 1평은 $3.3m^2$ 로 환산하며, 소숫점 이하는 반드시 반올림 할 것.
- ※ 학교시설에 있어서 2개교 이상이 분용하고 있는 때는 다음의 구분에 의거 기입할 것. 단, 부분적인 전용시설물은 해당 학교에 기입되어야 함. (최소한 보통교실은 전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필요한 보통교실은 기입되어야 함)
- ① 소유권을 가진 학교
- ② 2개 이상의 학교중 최상급의 학교
- 20. 「학교용지」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지를 아래 구분에 의거 기입할 것.
 - 「분용소유지」 분용기관 및 단체소유로서 일대과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차용한 토지.
 - 「개인소유지」 개인소유자를 일대과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차용한 토지.
 - 「대지」 학교건물의 건축을 대지 즉, 옥외 계약상 실습지를 제외한 전면적을 기입할 것. (대지는 별첨상 지상권을 취하 총면적의 2.5배 이상)
 - 「실습지」 실제학계의 실습지가 아니라도 학교가 소유하는 일대과 농장은 전부 기입할 것.
- 21. 「교사」의 「정규교실」은 가교실, 대용교실 이외의 교실
 - 「가교실」 옥외로 임시 가설한 건물로서 기초가 없이 지면에 임시 조치하였거나 흙벽돌조, 콘크리트조 등으로 속조가 되고 지붕틀이 없는 가설지붕 구조의 교실.
 - 「대용교실」 각종건물의 옥외 및 승강구의 창고, 농구사, 강당등 본래의 사용목적 아닌 건물로서 임시 칸막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는 교실과 정규 또는 가교실을 칸막이 한 교실 및 학교소유가 아닌 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교실을 말함. (단, 면적은 기입하지 않겠)
 - 「특별교실」 아동의 특별활동에 사용하는 교실로서 과학실험실, 공작실, 미술실, 음악실, 표현실등 (단, 도서실은 제외하여 별도 기입할 것).
 - 「변소」 건물이 아닌 변소는 제외(노천변소 제외)하고 다음 구분에 의거 기입할 것이며, () 내에는 변소의 동수를 기입할 것.
 - 「동수」에는 실제의 동수(건수가 아님)를 기입할 것. (동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변소가 있는 계소를 동수에 기입할 것)
- ※ 「특별교실」과 「관리실」에 있어서는 대용교실(칸막이 교실 포함)의 사용은 일체 인정치 않는다.
 - 「관리실」의 실수는 다음 구분에 의거 기입할 것.
 - 1~33㎡은 0.5실, 34~66㎡은 1실, 67~99㎡은 1.5실 등
- ※ 강당 1개를 칸막이하여 보통교실 6실로 사용할 때 "강당"안에 1실과 그 면적을 기입하고 보통교실외 대용교실에 6실(면적은 기입치 않는다)을 중복해서 기입한다.
 - 「대변기」 1인이 사용하는 대변기의 개수를 기입.
 - 「소변기」 1인이 사용하는 소변기의 개수를 기입하되 소변기의 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한번씩 사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을 소변기의 개수로 기입할 것.

- 「창고」에는 면적의 대소에는 관계없이 실제 동수를 기입할 것.
- 「통로」 ① 수량은 기입치 말고 면적만 기입할 것.
 - ② 통로에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의 남하와 현관등에 건물간에 연한 지붕이 있는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입할 것.
- ※ 부속실의 실수계에는 각실의 합계를 기입하되 면소(면적의 개수는 제외) 및 창고는 동수를 제외 합산 기입할 것.
 - (예) 급식실+숙직실+변소동수+창고동수+기타 = 계
- 22.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
 - 「대지」 학교구외에 별도로 있는 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입할 것. (교장자택대지 등)
 - 「기타건물」 학교구외에 별도로 학교소유건물중 「21. 교사」에 기재되지 못한 건물의 동수와 면적을 기입할 것.
 - 「조영」에는 「21. 교사」중에서 야간에 사용가능하게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실수(면소 및 창고는 동수)를 기입할 것.
 - 「상수도」 상수도의 폭지(전)수를 기입.
 - 「간이급수」 우물등을 여과장치에 물을 올려 저수탱크에 용포수를 저장한 후 급수점으로 펌프 하는 간이급수시설의 계소를 기입할 것.
 - 「우물 및 펌부」 용포가능한 우물 및 펌부의 개수를 기입.
 - 「스림난로」 「21. 교사」중에서 지난 겨울철에 스팀 및 난로시설이 되었던 실수를 기입
 - 「전화시설」 전화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 기입토록 하며, 전화시설대수를 기입할 것. (보통 1대일 기입) (전화기 개수가 아님)
 - 「소화기」 포말 002동의 화약제로 된 소화기의 개수만을 기입.
- 23. 「주요 교구 현황」
 - 「책·결상」 조로 표시하며, 2인용의 책·결상을 1조로 하여 4인용 책·결상은 2조로, 1인용 책·결상은 2인이 사용하는 것을 1조로 판단기입할 것.
 - 「독판」 대소에는 관계없이 보유개수를 기입할 것.(단, 규격이 400×600 이하의 것은 제외할 것)
 - 「도서」 도서실의 장서수나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학교 보유도서수를 기입할 것.(교사용 교과는 제외할 것)
- 24 ~ 1. 「용도별 특별교실」은 「21. 교사」의 특별교실수를 각 종류별로 구분 기입할 것. (도서실은 제외)
- 24 ~ 2. 「통로현황」은 「21. 교사」의 통로면적을 구분하여 기입할 것.
 - 「기타」에는 현관등의 면적을 기입.
- 25. 「구조별 건물」 건물의 실수와 면적을 구조별로 기입하며, 면적에는 2층 이상의 건물일 때는 연면적(1층면적+2층면적+...)를 기입할 것.(단, 대용교실의 실수는 제외할 것) 단, 「창고」·「변소」·「사택」은 건물의 동수를 실수에 기입할 것.
 - 「부속실 및 기타」에는 「21. 교사」중의 도서시설, 강당 및 체육관, 동로, 부속실과 「22. 기타시설」의 합계를 기입할 것.
 - 「기타」 흙벽돌조, 콘크리트등을 기입할 것.
- ※ 「구조별 건물」의 총실수와 면적은 「21. 교사」중 대용교실을 제외한 실수와 「22. 기타시설」의 합한 실수와 면적이 서로 같아야 함.

기입상의 유의점 (시설사항 2)

26. 「노후건물」 정규모사과 기교사 (대용교실 제외) 관리실 및 부속실 등에 대하여 아래의 구분에 의거 그 실수 (창고, 변소, 사택 등은 동수) 와 면적을 기입할 것.
 「계속」 건물이 극도로 노후화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건물로 계속을 요하는 건물 (신축공사비의 50% 이상 소요)
 「중수」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1~2년에 극심한 피해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건물로서 계속공사비의 30~50%로서 수리하여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노후건물
 「경수」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상에는 지장이 없는 건물로서 계속공사비의 30% 이내로 수리함으로써 정상화되는 건물
27. 「경과년수를 목조건물」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중에서 목조건물로 된 것은 경과년수별 구분에 의거 실수와 면적을 기입할 것.
- ※ 「25. 구조별 건물」의 「보통 및 특별교실의 목조」와 「관리실의 목조」의 실수와 면적의 합한 것과 각기 서로 같아야 함.
28. 「보통교실 변동사항」 보통교실중 정규모사과 기교실만을 대상으로 함(대용교실은 제외)
 「전년도초 교실수」 1971년 4월 1일 현재의 교실수 (1971년 4월 1일 현재로 조사된 수와 같아야 함)
 「금년도 초 교실보유수」 1972년 4월 1일 현재의 교실 수
 「연중 감축교실 수」 1971년 4월 2일부터 1972년 4월 1일간의 감축된 교실수를 구분에 의하여 기입할 것.
 「전용」 보통교실이 보통교실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다른 건물로 전용된 실수와 면적을 기입할 것.
 「연중 증가교실」 1971년 4월 2일부터 1972년 4월 1일간의 증가된 교실수를 구분에

의하여 기입할 것.

「전용」 대용교실이나 보통교실이 아닌 건물이 영구적인 정규모사 또는 기교실로 전용된 교실수와 면적을 기입할 것.

※ 「계속을 위한 철거」와 「노후교실 계속」은 서로 같아야 함.

※ 1교실을 철거 (계속을 위한 철거) 하여 2교실을 지었을 때 「계속을 위한 철거」의 1실과 면적을 기입하고 「노후교실 계속」에 1실과 면적을 나머지 1교실은 「신중축」에 기입한다.

「부속교실수」에는 현전성 학급수에서 보통교실수 (대용교실 제외)를 빼 수를 실수에 기입하고 그 면적은 실수에 66㎡를 곱한 수를 기입할 것.

「창고」 전년도 초 교실수에서 전년도간의 변동률 가감한 수가 금년도 초 보유교실수가 되어야 함.

29. 「시청과 기재 및 교재」에는 종류별로 현 보유수를 기입할 것 (앨트 및 암실 시설유무는 적당한 곳에 ○표를 할 것 단, 종류명이 기입되지 않는 기재 및 교재는 제외할 것)

30. 「교과별 교구 보유 현황」에는 학교 교구 정비 기준명 (문교부령 제199호)에 의거한 교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할 것.

기입
수
1972.4.1

26. 노후건물

구 분	계						중						수						합 계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도시시설 및 강당 체육관	부속실 및 사택	기타 시설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도시시설 및 강당 체육관	부속실 및 사택	기타 시설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도시시설 및 강당 체육관	부속실 및 사택	기타 시설	
	정규	가교실						정규	가교실						정규	가교실							
실 수	4			1																			5
면적 (㎡)	385			83																			468

27. 경력년수별 부교직원

구 분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합 계					
	0~15년	16~24년	25~40년	41이상년	계	0~15년	16~24년	25~40년	41이상년	계	0~15년	16~24년	25~40년	41이상년	계	0~15년	16~24년	25~40년	41이상년	계	
	실 수			4		4									1	1					5
면적			385		385									66	66					451	451

28. 보통교실의 변동상황

구 분	실 수	면적
전년도 초 교실수	12	964
연중감소 교실수	화 계	
	봉 수 배	
	일 반 철 치	
	계속유위 환철거	
	전 용	
계	12	964
연중증가 교실수	신 증 추	
	노후교실계속	
	전 용	
계		
금년도 초 보유교실수	12	964
부속 교실 수		

29. 시청과 기계 및 교재

종 류	보유수	
	8mm	16mm
교재영과		
순라이드		
출사필		
녹음테이프		
음반	3	
표본	24	
실물및모형	1	
용관자료	3	
지도		33
책		7

(2) 기계

종 류	보유수	
	8mm	16mm
업사기		
환동		
주식물판동기	1	
실물판동기		
녹음		
견라디오	1	
스피커	12	
촬영연필		
카메라		
사전확대기		
필리미비전		
스프링	1	
용관	5	
저시및전시관	3	
발라이드복사기		
염프실비		
암실실비		

30. 교과별 교육 보유 현황

구 분	보유 현황	
	종류 수	보유수량
국어	4	5
사회	6	7
산수	15	16
자연	52	166
음악	10	13
체육	44	128
미술	52	73
실과	87	116
반공도덕	3	3
계	273	527